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3월 31일, 김현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6년 4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9.1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의원)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대한 현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정부사업 수행기관 등이 산출한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토록 하는 법적 의무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 공급 체계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지민)

- 현행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AI허브를 2017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AI허브란 AI 학습용 데이터(14개 분야)와 국내외 기관·기업에서 보유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26년 6월 기준 14개 분야¹⁾에 대한 945종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제공 중임.
-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AI)을 추진하는 정부 사업이 수 행되면서 다량의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으나 AI허브에 연계되지 못한 데이터가 일부 있어 학습용데이터로 활용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의 사업으로 구축·산출

1) 한국어, 영상이미지, 헬스케어, 교통물류, 재난안전환경, 농축수산, 문화관광, 스포츠, 교육, 로보틱스, 제조, 지식재산, 법률, 금융

된 학습용데이터가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긴 학습용데이터가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등의 재정이 투입된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데이터는 정부 재정의 결과물이므로, 그 공공성을 고려할 때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해 일반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는 AI 학습용데이터의 산출이 예상되는 경우 그 특성에 따라 제공·활용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방안을 수립할 때 AI허브 등 국가적으로 연계가 용이하고 효과성이 높은 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할 의무가 부과되는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통해 구축·산출된 학습용데이터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기관등의 역할이므로 통합제공시스템 연계·제공 의무

대상을 ‘국가기관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이미 학습용데이터 연계·제공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연계, 제공 등에 필요한 협력 요청을 수인할 의무를 다시 부과하고 있어 유사한 의무가 중복되어 부과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셋째**,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경영상 영업비밀 유지 등 데이터의 제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안 제15조의2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제공시스템에 대한 연계·제공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사유 일체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고 있어 예외 해당 여부가 모호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국가기관등의 사업으로 구축된 데이터가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명백히 규정되어야 할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고 그 외에 추가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가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되어야 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사업수행주체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현행법 제2조제12호는 학습용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정의²⁾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가진 데이터가 안 제15조의2에 따라 연계·제공의무가 있는 학습용데이터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되어야 하는 학습용데이터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사업수행주체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미리 학습용데이터로 연계·제공해야 하는 대상임을 고지하는 등 수범자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 구축·관리 및 제5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 이용 비용 징수 근거를 안 제15조의2제1항과 제6항으로 각각 이동시키므로, 현행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현행법 제15조제6항³⁾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여섯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안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될 것인바, 위임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장 한준호)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연계 또는 제공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 수행 주체를 구체화하고, 연계 또는 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며, 대통령령 개정예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 안 제15조의2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되는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 공시스템에 연계 또는 제공하도록 규정함.
- 그런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자와 비교할 때 조문의 예측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1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합제공시스템을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되는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 또는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에 국가기관등의 장을 추가하면서 그 외의 출연·보조사업 등의 사업 수행 주체는 각 호로 구체화하며, 학습용데이터 연계 또는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대통령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이 법이 공포된 날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합제공시스템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 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되는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 또는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국가기관 등의 장,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구체화하고, 연계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예시로 영업비밀의 보호, 제3자의 권리 침해 방지, 국가안전보장 등을 명시함(안 제15조의2제2항).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습용데이터 연계 또는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라.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6항 중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를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으로 한다.

안 제15조의2제1항 중 “민간이”를 “누구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기관등 또는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연계, 제공”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연계 또는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비용”을 “그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제2항에 따른 연계, 제공의 범위 및 절차와 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를 “제1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제2항에 따른 연계 또는 제공의 범위·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

축·산출되는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제3자의 권리 침해 방지,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의 장

2.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안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	<삭제>	(개정안과 같음)

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의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 제공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되는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제3자의 권리 침해 방지,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의

장

2.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3.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보조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

6호에 따른 간접

보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연계, 제공 등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기관등 또는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연계,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연계,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u><삭 제></u>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연계 또는 제공-----</u> ----- ----- -----. ④ (개정안 제5항과
--	--	---

신부장관은 통합제
공시스템에 제공된
학습용데이터의 안
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통합제
공시스템을 이용하
는 자에 대하여 비
용을 징수할 수 있
다.

⑦ 그 밖에 통합제
공시스템의 구축·
관리, 제2항에 따
른 연계, 제공의
범위 및 절차와 방
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음)

⑤ -----

-----그
이용에 대한 비용-
-----.

⑥ -----제1항
에 따른 통합제공
시스템의 구축·관
리, 제2항에 따른
연계 또는 제공의
범위·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조치
의 내용,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부칙 ----- <u>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u> -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를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되는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제3자의 권리 침해 방지,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계 또

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의 장

2.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연계 또는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에 제공된 학습용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제2항에 따

른 연계 또는 제공의 범위·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u><삭 제></u>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

<신 설>

제15조의2(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되는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제3자의 권리 침해 방지,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의 장
2.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
조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6
호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
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연계
또는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에 제공된 학습
용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합 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제2항에 따른 연계 또는 제공의 범위·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